

【붙임】

“조경공사 설계기준(KDS 34 00 00)”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 의견서

조경공사설계기준(KDS 34 00 00) 중 인공지반식재기반(KDS 34 30 15)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 행정예고(안)에 대한 개정의견

▶ 인공지반식재기반(KDS 34 30 15) 개정(안)

행정예고(안)	개 정(안)	비 고
4.1.3 방근시설 (1) 인공지반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 <u>(2)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 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관)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 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다.</u> (3)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1.3 방근시설 (1) 현행과 같음 <u>(2) “삭제”</u> (3)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1. 배경

조경설계기준 KDS 34 30 15 : 2024(인공식재기반) 개정안 4. 설계, 4.1.3 방근시설, (2)항과 (3)항에서는 각각 “(2)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관)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다(2021년 기존 규정). (3)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2024년 신설 규정)”로 규정되어 있음(2024년 7월 25일 행정 예고 고시 내용).

그러나, 현행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 41 40 14: 2021(인공지반녹화방수방근공사), 2.2 적용 재료의 선정 방법, 2.2.2 방근층에는 “방근층의 선정은 한국산업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 성능 시험방법」에서 정한 품질 시험 및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행정 예고된 조정설계기준 KDS 34 30 15 : 2024(인공식재기반), 4. 설계, 4.1.3 방근시설, (2)항의 “(2)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는

- 1)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 재료에 대한 규정이 없고,
- 2) 현장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고, 방근 성능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KS F 4938에 따른 공인 평가 사례도 없는 상황)

3. 검토 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 행정 고시에서는 조정설계기준 KDS 34 30 15 : 2024(인공식재기반), 4. 설계, 4.1.3 방근시설, (3)항에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나, KCS 41 40 14: 2021(인공지반녹화방수방근공사)에는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건축(조정) 시공 과정에서 재료 선정, 공사 관리, 품질 시험 및 검사에 많은 혼란(설계 책임, 시공 책임, 감리 책임 등)이 발생되고, 특히 준공 후 입주 시, 입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자 분쟁(기회 소송 등)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이는 지난 2021년 조정설계기준 개정 당시부터 관련 업계,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정설계기준 KDS 34 30 15 : 2024(인공식재기반), 4. 설계, 4.1.3 방근시설, (2)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삭제 요청)하였던 사안으로 급변 개정에서는 삭제되어야 함.

- [참고자료] 1. 옥상녹화(KDS 34 70 46)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인공식재기반(KDS 34 30 15)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인공식재기반 식재(KCS 34 40 15)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